##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

[시행 2024. 1. 1.] [고용노동부령 제407호, 2023. 12. 29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 (공공노사관계과) 044-202-7652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1, 12, 14.]

제2조(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)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한다)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(이하 "노동조합"이라한다)의 대표자가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한다) 제2조에 따라지부(支部)・분회(分會) 등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통보서에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지부・분회 등의 운영규정을 첨부하여야한다.

[전문개정 2011. 12. 14.]

- 제3조(교섭요구서의 제출) 영 제6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교섭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(지부・분회 등의 경우 교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)
  - 2. 교섭 요구사항

[전문개정 2011. 12. 14.]

- 제4조(조정 등의 신청)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정(調停) 또는 중재(仲裁)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「노동위원회법」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(이하 "중앙노동위원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단체교섭의 경위
  - 2.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
  - 3.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
  -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12. 14.]

- 제5조(서식 등)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. 12. 29.>
  - 1. 법 제5조제2항·제17조제2항 및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(이하 "노동조합법"이라 한다)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: 별지 제5호서식
  - 2.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: 별지 제6호서식
  - 3. 법 제17조제2항, 노동조합법 제12조제2항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(이하 "노 동조합법 시행령"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: 별지 제 7호서식
  - 4. 법 제17조제2항,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: 별지 제5호서식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5.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: 별지 제8호 서식
- 6.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 · 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: 별지 제9호서식
- 7.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 · 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: 별지 제10호서식
- 8.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규약, 노동조합 결의・처분, 단체협약 시정명령서: 별지 제11호서식
- 9.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: 별지 제12호서식
- 10.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신고서: 별지 제13호서식
- 11.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서: 별지 제14호서식
- 12.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: 별지 제15호서식
- 13.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결과보고서 : 별지 제16호서 식
- 14.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 고증: 별지 제17호서식
- 15. 제6조제1항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」(이하 "노동조합법 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신청서: 별지 제18호서식
- 16.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동단체카드: 별지 제19호서식 [전문개정 2011. 12. 14.]
- 제6조(다른 부령과의 관계) ①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중 "고용노동부장관,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"은 "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"으로, 같은 규칙 제5조 중 "행정관청"은 각각 "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"으로, 제7조제2항 중 "행정관청(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)"은 "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"으로 보고, 같은 규칙 중 "행정관청"은 각각 "고용노동관서의 장"으로 보고, 같은 규칙 중 "행정관청"은 각각 "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"으로 본다. <개정 2021. 7. 6.>
  - ②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, 제11조의2, 제12조, 제12조의2,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.<개정 2021. 7. 6.>

[전문개정 2011. 12. 14.]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